

삼척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사)위스타트 산하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사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직원' 을 모집 합니다.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 업무
팀장 · 팀원 (계약직)	0명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개인 사례 관리 업무 - 예결산 및 회계 · 행정 관련 업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담당 사업 진행 실무 등 - 기타 기관 운영 관련 업무

2. 채용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전형(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 심사)

나. 2차 전형: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 요건 및 자격기준

채용분야	응시 자격
공통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채용 공고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라. 운전 가능한 자(자차 소유자)
팀장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

	<p>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팀원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p>	<p>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p> <p>2)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p> <p>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1. '청소년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p> <p>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p> <p>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p> <p>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p>	

4. 근무조건

구분	근무시간	급여	비고
<p>팀장·팀원 (계약직)</p>	<p>주 40시간 근무 (09:00~18:00)</p>	<p>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매뉴얼'지침에 의거 협의 후 책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특성상 주말 근무의 경우도 있음 - 센터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시 가능 - 4대 보험 적용 - 3개월 수습기간 있음 - 근무시작: 계약일로부터 1년

5. 채용일정

구분	세부사항
접수기간	2024. 4. 29.(월)~5. 12.(일)
접수처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 꿈드림 담당부서
접수방법	- 방문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5. 13.(월) 개별공고
2차 면접심사	일 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장 소 :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실
최종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홈페이지 공고

※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세부사항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 경력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졸업증명서 각 1부 (대학, 대학원)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병역) 각 1부(해당자) -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해당자)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증빙서류 (해당자) <p>※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p>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원본 지참 → 확인 후 반환) - 통장사본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가.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본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서류제출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학력,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및 면접심사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합니다.
- 마.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관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아. 채용문의 :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 장영애 ☎ 033-575-5003)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팀장/팀원		
성명		생년월일	
<p>○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p> <p>○ 지원동기</p> <p>○ 직무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직무에 임하는 자세</p> <p>○ 교육 및 연수사항</p> <p>○ 특기사항</p>			

※본 양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2매 이내로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